|  |  |  |
| --- | --- | ---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기업회계 처리규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재회[2012]13호  재정부 및 국무원 유관 부서/위원회, 유관 직속기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원사무소: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에 협력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화 시범업무 방안>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세[2011]110호)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기업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바, 본 지역의 유관 기업에 대한 집행을 시행하길 바란다. 집행 중 문제발생 시, 즉시 본 부에 피드백을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기업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2012년 7월 5일  첨부문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기업 회계처리규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방안>>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세[2011]110호)등 유관 규정에 근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유관 기업회계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업무 납세인의 차액징수 회계처리  (1) 일반 납세인 회계처리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업무 기간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비시범업무 납세인에게 지불한 대금을 공제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 특별란을 증설하고, 이는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공제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을 기록하는데 이용한다. 또한, “주영업무수입(매출액)”,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 등 유관 과목은 경영업무 유형에 따라 명세계산을 한다.  기업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과 상술한 증치세액의 차액에 따라,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 에 따라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에 일차적으로 장부 처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말에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매출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소규모 납세인 회계처리  소규모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업무 기간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비시범업무 납세인에게 지불한 대금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공제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기업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과 상술한 증치세 차액에 따라,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에 일차적으로 장부 처리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말에 규정에 따라 당기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여 감소한 납부하는 증치세는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주영업무원가”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증치세 기말미공제세액의 회계처리  시범업무 시행지역이면서 과세대상 서비스의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경우, 시범업무를 시작하는 당월 초 기존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서비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납부하는 세금/비용” 과목에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명세과목을 증설해야 한다.  시범업무를 시작 당월 초, 기업은 과세대상 서비스 매출세액의 공제불가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매입세액 전출)” 과목에 대변계상해야 한다. 그 이후 기간에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공제허용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매입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며, “납부하는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납부하는 세금/비용-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의 기말잔액은 유동성에 근거하여 자산부채표(대차대조표)의 “기타유동자산” 항목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3. 과도기성 재정지원자금 회계처리  시범업무 납세인은 신구세제 전환기간에 실제 세금부담 증가로 인하여 재정세무부문에 재정지원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말에 기업이 재정지원정책에 규정된 유관 조건에 부합하고, 재정지원자금의 취득이 예상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취득하는 금액에 따라 “기타미수금” 등 과목에 차변계상, “영업외수입”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재정지원자금을 실제로 수취한 경우, 실제 수취한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기타미수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4.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와 기술유지비용에서 차감하는 증치세액의 회계처리  (1) 증치세 일반납세인 회계처리  세법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시 지불한 비용 및 기술유지비에 대해서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감면세액" 전문란을 증설하고, 해당 기업이 규정에 따라 감면한 증치세 납부세액을 기록해야 한다.  기업이 구입한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미지급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감면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이연수익”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관리비용” 과목에 차변계상, “감가상각누계액” 과목에 대변계상하며, 이와 동시에, “이연수익”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업에 발생한 기술유지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차감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감면세액)"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2) 소규모납세인의 회계처리  세법 유관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인이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에 대하여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기업이 구입한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은행예금” “외상매입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 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이연수익”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 “감가상각누계액”과목에 대변계상하며, “이연수익”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업에 발생한 기술유지비는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관리비용” 등 과목에 차변계상, “은행예금”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 “관리비용” 등 과목에 대변계상한다.  기말 "납부하는 세금/비용-납부하는 증치세" 과목이 차변잔액인 경우, 유동성에 근거하여 자산부채표(대차대조표)의 “기타유동자산” 항목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대변잔액일 경우, 자산부채표의 “납부하는 세금/비용”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  | **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  **试点有关企业会计处理规定》的通知**  财会[2012]13号  财政部国务院有关部委、有关直属机构，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  　　为配合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工作，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的通知》（财税〔2011〕110号）等相关规定，我们制定了《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企业会计处理规定》，请布置本地区相关企业执行。执行中有何问题，请及时反馈我部。  　　附件：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企业会计处理规定  　　财政部  　　2012年7月5日  附件:  **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企业**  **会计处理规定**  根据“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的通知” （财税〔2011〕110号）等相关规定，现就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企业会计处理规定如下：  一、试点纳税人差额征税的会计处理  （一）一般纳税人的会计处理  一般纳税人提供应税服务，试点期间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有关规定允许从销售额中扣除其支付给非试点纳税人价款的，应在“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下增设“营改增抵减的销项税额”专栏，用于记录该企业因按规定扣减销售额而减少的销项税额；同时，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成本”等相关科目应按经营业务的种类进行明细核算。  企业接受应税服务时，按规定允许扣减销售额而减少的销项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营改增抵减的销项税额） ”科目，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与上述增值税额的差额，借记“主营业务成本”等科目，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贷记“银行存款”、“应付账款”等科目。  对于期末一次性进行账务处理的企业，期末，按规定当期允许扣减销售额而减少的销项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营改增抵减的销项税额） ”科目，贷记“主营业务成本”等科目。  （二）小规模纳税人的会计处理  小规模纳税人提供应税服务，试点期间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有关规定允许从销售额中扣除其支付给非试点纳税人价款的，按规定扣减销售额而减少的应交增值税应直接冲减“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  企业接受应税服务时，按规定允许扣减销售额而减少的应交增值税，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与上述增值税额的差额，借记“主营业务成本”等科目，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贷记“银行存款”、“应付账款”等科目。  对于期末一次性进行账务处理的企业，期末，按规定当期允许扣减销售额而减少的应交增值税，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贷记“主营业务成本”等科目。  二、增值税期末留抵税额的会计处理  试点地区兼有应税服务的原增值税一般纳税人，截止到开始试点当月月初的增值税留抵税额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有关规定不得从应税服务的销项税额中抵扣的，应在“应交税费” 科目下增设“增值税留抵税额”明细科目。  开始试点当月月初，企业应按不得从应税服务的销项税额中抵扣的增值税留抵税额，借记“应交税费——增值税留抵税额”科目，贷记 “应交税费——应交增值税（进项税额转出）”科目。待以后期间允许抵扣时，按允许抵扣的金额，借记 “应交税费——应交增值税（进项税额）”科目，贷记“应交税费——增值税留抵税额”科目。  “应交税费——增值税留抵税额”科目期末余额应根据其流动性在资产负债表中的“其他流动资产”项目或“其他非流动资产”项目列示。  三、取得过渡性财政扶持资金的会计处理  试点纳税人在新老税制转换期间因实际税负增加而向财税部门申请取得财政扶持资金的，期末有确凿证据表明企业能够符合财政扶持政策规定的相关条件且预计能够收到财政扶持资金时，按应收的金额，借记“其他应收款”等科目，贷记“营业外收入”科目。待实际收到财政扶持资金时，按实际收到的金额，借记“银行存款”等科目，贷记“其他应收款”等科目。  四、增值税税控系统专用设备和技术维护费用抵减增值税额的会计处理  （一）增值税一般纳税人的会计处理  按税法有关规定，增值税一般纳税人初次购买增值税税控系统专用设备支付的费用以及缴纳的技术维护费允许在增值税应纳税额中全额抵减的，应在“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下增设“减免税款”专栏，用于记录该企业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  企业购入增值税税控系统专用设备，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借记“固定资产”科目，贷记“银行存款”、“应付账款”等科目。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减免税款）”科目，贷记“递延收益”科目。按期计提折旧，借记“管理费用”等科目，贷记“累计折旧”科目；同时，借记“递延收益”科目，贷记“管理费用”等科目。  企业发生技术维护费， 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 借记“管理费用”等科目，贷记“银行存款”等科目。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减免税款）”科目，贷记“管理费用”等科目。  （二）小规模纳税人的会计处理  按税法有关规定，小规模纳税人初次购买增值税税控系统专用设备支付的费用以及缴纳的技术维护费允许在增值税应纳税额中全额抵减的，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应直接冲减“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  企业购入增值税税控系统专用设备，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借记“固定资产”科目，贷记“银行存款”、“应付账款”等科目。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贷记“递延收益”科目。按期计提折旧，借记“管理费用”等科目，贷记“累计折旧”科目；同时，借记“递延收益”科目，贷记“管理费用”等科目。  企业发生技术维护费， 按实际支付或应付的金额，借记“管理费用”等科目，贷记“银行存款”等科目。按规定抵减的增值税应纳税额，借记“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贷记“管理费用”等科目。  “应交税费——应交增值税”科目期末如为借方余额，应根据其流动性在资产负债表中的“其他流动资产”项目或“其他非流动资产”项目列示；如为贷方余额，应在资产负债表中的“应交税费”项目列示。 |